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4권 3호 2004년 9월
pp. 19 ~ 23

사이버스토킹의 실태 및 고찰에 관한 연구

A Condition Analysis and Response Measures of Cyberstalking

김 태 환* / 정 일 석**
Kim, Tae Hwan / Jung, Il Seok

Abstract

In current society, there has been rapid change in process towards the information society from the industrial society. Cyberstalking can be regarded as a kind of new comer in the issue of contemporary crimes. The Cyberstalking has been focused on famous people and entertainers in th past, whereas more seriously, the range of victims has expanded to the public in recent. Form this aspect, the goal of this study is establish the cyberstalking by considering causes, characteristics and suggest legal, social methods.

Key words : cyberstalking, legal methods, social methods, public

요 지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사이버스토킹은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 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예전에는 주로 유명인이나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날로 심각성이 더해가는 사이버스토킹의 실태를 살피고 법적인 대응방안, 사회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사이버스토킹, 법적 대응방안, 사회적 대응방안, 일반인

Ⅰ. 서 론

Covello(1985)는 위기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불확정성의 개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회적 위기로서 범죄의 개념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게 되었으니 스토킹도 마찬가지이다. 스토킹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이버스토킹'이라는 비슷하지만 전혀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접하게 된 것이다. 사이버스토킹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스토킹과 차이가 있지만 사이버스토킹이 오프라인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 사이버스토킹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처 방안 연구와 병행하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의 개념과 특징, 외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법률적, 사회제도적 대응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사이버스토킹의 개념 및 실태

2.1 스토킹의 개념

스토킹(Stalking)은 영어 'Stalk'에서 유래된 말로 '몰래 접근하다', '미행하다' 는 의미다. 스토커는 본래 병적으로 집착하여 쫓아다니는 사람을 말하며 스토커의 그러한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한다. 스토킹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면 미국 연방법 제18장 제2261A조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2회 이상 특정개인에 대한 죽음이나 신체상해 또는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죽음이나 신체상해의 상당한 공포감을 주는 행위' 라고 규정한 바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스토킹법에는 '의도적이고, 악의를 가지고, 타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추근대거나 괴롭히는 것(Willful, Malicious and Re-

* 정회원,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E-mail: taehwan@yongin.ac.kr)
** 용인대학교 대학원

peated following and harassing of another person)' 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일본의X 스토킹행위등의규제에 관한법률X 에서는 '동일한 자에 대하여 따라다니기 등을 반복하여 행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제15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던X 스토킹처벌에관한처벌특례법안' 에서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하여 일상적으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그림을 전달함으로써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스토킹으로 규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고의성.

② 따라다니기, 집이나 직장등 주거반경에서 기다리거나 감시하거나 경계를 침범하는 등의 행위.

③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외포감,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물건이나 문서, 이메일, 화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행위.

④ 위와 같은 행위가 적어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2.2 사이버스토킹의 특징

스토킹은 현실공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4세에서 39세 남녀 네티즌 6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은 27.1%가 사이버공간에서 성폭력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사이버스토킹 피해도 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스토킹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스토킹행위를 말한다. 아직까지 사이버스토킹에 대해 통용되는 정의는 없지만 사이버스토킹은 인터넷, 이메일 등과 같은 전자통신장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스토킹의 유형이 계속해서 새로이 발생하고 있고 기술의 발전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방법의 스토킹 유형이 나타나고 있어 스토킹의 정의 또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사이버스토킹은 물리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스토킹 보다 덜 위협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사실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더 위협적이다.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의 보장이 오히려 오프라인 스토킹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다.

오프라인 스토킹과 사이버스토킹은 괴롭힘이나 위협에 있어 그 형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오프라인 스토킹과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도 지니고 있다. 스토커는 피해자를 자신의 감시하에 두고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스토커의 대부분은 남성이고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또한 남·여를 떠나 스토커와 피해자가 알고 지냈던 경우 피해자 측에서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면서부터 사이버스토킹이 시작된다. 반면 차이점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스토킹은 일반적으로 가해자, 희생자가 지리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어야 가능하지만 사이버스토킹에서는 지역의 제한이 없다. 거주장소가 달라도 되고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해도 발생가능하다. 또한 사이버스토커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괴롭히고 위협을 가하도록 할 수 있다.

2.3 주요국가의 실태

2.3.1 미국

미국에서는 1989년 여배우 레베카세퍼의 살해, 토크쇼 진행자인 데이비드레터만을 팬이 집요하게 괴롭힌 사건을 계기로 하여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된 후 2년 이내에 30여개 주에서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후 2년 이내에 30여개 주에서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현재 메인주를 제외한 49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서 스토킹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1993년 9월에는 전미형사협회(National Criminal Justice Association; NCJA)가 각 주의 정책입안자와 사법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스토킹방지법 모델법안을 책정한 바 있다.

2.3.2 영국

황실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이 문제가 되어 1997년 3월 스토킹을 방지하는 법률인 '괴롭힘행위보호법(The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이 제정되어 그 일부가 6월에 시행되었다. 영국에서는 스토킹의 정의에 대한 문제로 기존법률에 의해서는 명백한 협박이 아니고 표면상으로 무해한 행위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지만 도로에서 미행을 하거나 꽃을 계속해서 보내는 행위등이 언뜻 보기에는 피해가 없는 행위로 보일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스토커, 귀찮은 이웃사람(nuisance neighbours), 인종학대자(racial abusers) 등으로부터 괴롭힘 행위를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적 구제조치를 규정한 특색이 있다. 형사적제재로 유죄 평결 후 피고소인이 재차 괴롭힘이나 폭행을 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형사법원은 긴급저지명령(restraining orders)을 할 수 있고 명령위반에 대해별도 기소할 수 있다. 민사적구제로 피해자

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과 저지명령을 할 수 있는데 저지명령 위반의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긴급저지명령과 저지명령 위반의 경우 장기 5년까지 자유형을 가할 수 있다.

2.3.3 일 본

일본은 2000년 11월 24일 '스토킹행위규제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률은 규제의 대상으로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행위'와 '스토커행위'에 대해 열거하여 규제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반복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경찰서장은 가해자에게 경고할 수 있고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안위원회에서는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3.4 캐나다

캐나다형법은 1993년 형법조문 제264조에 스토킹을 "범죄적인 괴롭힘(Criminal harassment)"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에 장기 5년의 자유형을 부과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을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repeatedly follow),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반복적인 연락을 취하거나(repeatedly communicate with), 다른 사람이 방문하거나, 일하는 장소를 지켜보거나(watch), 그 주위를 배회하거나(beset), 다른 사람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협적 행위(threating conduct)를 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법률적 대응 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스토킹에 대한 별도의 처벌법규가 없는 상태이다. 다만 1999년 5월 제15대 국회에서 '스토킹방지특례법안'이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 재차 상정되었으나 입법을 이루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법규 중 스토킹 행위에 대해 대응 가능한 법조항과 스토킹방지특례법안의 내용을 통해 법률적인 사이버스토킹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3.1 형 법

통신수단을 통한 반복적인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빠지거나 신경쇠약이 발생할 경우 상해죄(제257조제1항)를 적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이나 외포심을 가지게 하는 행위로 직접적인 협박뿐 아니라 이메일, 휴대폰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제283조제1항)의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제307조)로 처벌이 가능하고, 스토커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나 직장 등에 동의 없이 침입하거나 그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제319조)로 처벌이 가능하다.

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게시판에 게재함과 동시에 음란한 사진을 첨부하거나 애인을 구한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피해자 명의로 게재하는 경우나 피해자의 이메일을 열람, 그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제49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 제61조에 의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문언을 전송하는 행위, 협박성 내용의 문언이나 사진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제65조제1항에 의해 처벌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 보호 및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44조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스토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보통신망의 관리자에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 위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아쉬움이 있다.

3.3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시 처벌함을 규정하고 있다.

3.4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3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자 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벌하고 있다.

3.5. 스토킹방지특례법안

스토킹에 대해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그림을 전달함으로써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스토킹의 방법으로 컴퓨터통신을 규정하고 있어 사이버스토킹 행위 처벌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토커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접근금지 및 유치 등의 임시조치와 사회봉사명령, 수감명령 등의 보호처분까지 규정하고 있다.

4. 사회제도적 대응 방안

4.1 사이버스토커와 피해자의 심리 이해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스토커와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을 가지는 사이버스토커의 심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스토커는 과거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으며 정신장애나 인격 장애의 특성을 보인다. 또한 애정망상과 우울장애, 알콜 남용, 성도착증 등의 정신적 질환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토킹 행위의 경우 스토커의 정체가 피해자에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스토커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사람도 충분히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보지 못하거나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사이버스토커가 될 수 있다. 특정 연예인에 대해 사이버공간에서 구애행위 등을 하는 경우와 게시물의 내용만 보고 게시물 게시자에 대해 스토킹을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사이버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인 스토킹 보다 피해의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 오프라인스토커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는 사전에 피해를 입을 것에 대비하고 사설경호원을 이용하거나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사이버스토커는 피해자에게 이메일, 핸드폰 문자 메세지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사이버공간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자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간혹 사이버스토커의 이러한 지속적인 공격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자체를 접속하지 않는 인터넷 거부증을 만들기도 하고, 스토커에게 차라리 항복하고 스토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자포자기의 심리상태를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사이버스토커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이유와 그 심리상태를 분석하여 어떠한 심리상태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지 분석하고 피해자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4.2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명령제도 활용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제도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스토킹피해자의 경우 범죄피해구조제도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스토커의 스토킹행위가 입증될 경우 사이버공간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오프라인 스토킹범죄에 있어 법원이 스토커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하는 것과 같이 사이버스토커에게 피해자의 홈페이지, 피해자가 회원으로 가입한 동호회싸이트 등 피해자와 관련된 특정 싸이트에 대해 접속과 게시물을 남기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피해자에게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송을 금지하는 명령, 사이버공간에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의 글, 사진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등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던 다양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명령을 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스토커의 석방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는 제도, 스토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정신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

4.3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규제와 처벌강화

오프라인스토킹에 대한 처벌 법규가 아직까지 부재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처벌까지 규정한 법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스토킹의 본질이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볼때 장차 스토킹관련 법규를 제정시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며 때늦은 감이 있다.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처벌 법규 제정시 굳이 오프라인스토킹과 구별할 필요는 없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이버스토킹과 오프라인스토킹의 차이점을 인식한 법규의 제정이 필요하다.

첫째, 피해자와 스토커가 동일한 지역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점에서 스토킹의 정의에 있어 미행이나 기다리기 뿐 아니라 휴대전화, 컴퓨터통신, 이메일 등 다

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스토킹행위로 간주할 수 있도록 스토킹행위 유형의 정의시 제한적인 열거가 아닌 예시적 열거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사이버스토커는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는 것보다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 라고 규정하여 제3자를 통한 사이버스토킹 행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3자를 통한 사이버스토킹의 실례로 인터넷 게시판에 '섹스파트너 구함' 이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의 연락처, 이메일, 집주소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방법이 있다.

4.4 사이버위기관리 컨설팅 서비스 이용

오프라인에서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피해예방과 보호가 부족한 경우 사설경호원을 고용하거나 민간경비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사이버스토킹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이버경호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처함이 바람직하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이버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대응해 주는 서비스가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사이버스토킹등 사이버위기 관리를 위한 서비스 방법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요구된다.

5. 결 론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대응 방안의 연구는 오프라인 스토킹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스토킹방지특례법안 제정시 사이버스토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피해 발생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피해 발생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피해자는 계속되는 심각한 피해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사이버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와 연구를 통해 사이버스토킹 발생을 억제시키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은경, 정완, 정진수(2000) 신종성폭력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백광훈(2001) 사이버스토킹과 그 처벌법규 및 문제점.

정 완(2000) 스토킹범죄의 형사입법동향.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스토킹범죄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일자:1999. 5. 24.,의안번호:1966)

◎ 논문접수일 : 2004년 6월 10일
◎ 심사의뢰일 : 2004년 6월 11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9월 10일